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2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김주영
김태년 · 이학영 · 이광재
윤후덕 · 이주희 · 안도걸
정준호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u>8천만원</u>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u>7천만원</u> 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 [<u>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u>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 <u>9천만 원</u> ----- ----- ----- ----- ----- ----- <u>8천만원</u> ----- -----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
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②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